

# 정부, 축산법 개정법률안

## 입법예고

- 가축시장 개설 및 관리 축협에서만 하도록 일원화
- 종축 이외의 숫가축 거세할 수 있는 규정 신설
- 양돈업(종돈업) 등록업체 등록규모 변경시 도지사에게 신고토록
- 양돈업 허가업체 허가규모 변경시 농림수산부 승인받도록
- 종축·기축 정액의 수출입 탄력운영

정부는 지난 6월 9일 양돈업(종돈업) 등록업체와 허가업체가 등록규모 또는 허가규모를 변경했을 경우 등록업체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고, 허가업체는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개정법률(안)을 입법예고했다.

축산법 개정법률(안)에 따르면, 지금까지 시장·군수가 개설하고 축협이 관리하던 가축시장을 축협에서만 개설·관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.

또 개정안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입할 수 있던 종축, 인공수정용 정액 등을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입 할 수 있도록 했다.

그밖에 개정안은 가축개량과 육질개선을 위해 종축을 제외한 모든 숫가축을 거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. 또 개정(안)은 가

축을 보호하기 위해 「종축보호지역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지역에서는 ▷ 전염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양축업과 ▷ 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.

이와같이 정부가 양돈업(종축업)의 등록과 허가 규모를 신고와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, 지금까지 축산법에 돈사 등 시설 변경만 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가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이에 따라 축산업의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변경과 함께 등록규모(두수)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정부는 축산법 개정(안)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
다음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축산법 개정법률(안)의 주요 내용이다.

축산법·중개정법률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5 조의 2 (종축등의 수출입허가) <u>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축, 종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축 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(이하 “정액”이라 한다)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<u>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u>	제 5 조의 2 (종축등의 수출입허가) <u>농림수산부령이</u> ..... ..... ..... <u>농림수산부장관</u> <u>의</u> ..... <u>다만, 농림수산부장관이</u> <u>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</u> <u>다.</u>
제 9 조 (보호지역의 지정) <u>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가축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지역 및 당해 보호지역안에서 보호할 가축을 지정할 수 있다.</u>	제 9 조 (보호지역의 지정) ① <u>농림수산부장관 또는</u> ..... ..... ..... ② <u>제 1 항에 의한 보호지역의 설정범위등 필요</u> <u>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(신 설)	제 9 조의 2 (행위제한) 제 9 조 제 1 항에 의거 지정된 보호지역안에서는 가축의 개량과 보호에 지장을 주는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. 1. 전염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양축업 2. 소음 등 기타 공해를 발생시키는 산업
(신 설)	제 11 조 (거세) ① <u>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사양자에 대하여 종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목축의 거세를 하게 할 수 있다.</u> 다만,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후 보종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생 략
제 13 조 (종축업의 등록 및 부화업의 허가) ①~③ 생 략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“종축업자”라 한다)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부화업자”라 한다)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시설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	제 13 조 (종축업의 등록 및 부화업의 허가) ①~③ <u>현행과 같음</u> ④ ..... ..... <u>다음 각 호의 1에</u> <u>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</u> .....

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13조의 2 (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)

①~② 생 략

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(이하 “축산업자”라 한다)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~⑥ 생 략

### 제 5 장 가 축 시 장

제25조(가축시장의 개설등) ① 가축시장은 (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같다.) 군수가 아니면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2조(가축매매수수료등) ① 가축시장에서 가축의 매매가 성립된 때에는 가축의 매수인은 당해매매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축매매수수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..... 다만,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
2.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⑤~⑨ 현행과 같음

#### 제13조의 2 (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)

①~② 현행과 같음.

③ .....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등록규모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허가규모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
2.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
3.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등록 및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④~⑥ 현행과 같음.

### 제 5 장 가 축 시 장

제25조(가축시장의 개설 등) ① .....  
.....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,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(이하 “축협”이라 한다)가 아니면 이를 개설 및 관리를 할 수 없다.

제32조(가축매매수수료등) ① .....  
.....  
..... 농림수산부장관이 .....  
...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개설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매매수수료영수증을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